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5. 26.(목)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5월 16일에 있었던 제2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5월 24일에 있었던 제28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16-29-12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201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및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세입은 9,92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12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614억원입니다. 이 중 기금세입은 미래부 소관 세입을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세출은 2,183억원으로 일반회계 53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647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9,926억원으로 '16년도 대비해서 1,852억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12억원으로 251억원이 감소했는데 통신시장 안정화에 따라 과징금 등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방통기금은 9,614억원으로 1,601억원 감소했는데 방송사 법정분담금 징수액과 주파수 할당 대가 징수액이 2017년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입니다. 총 세출은 기재부가 제시한 지출 한도에 맞춘 2,183억원으로 '16년도 대비 90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536억원으로 20억원 감소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647억원으로 7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편성 기본방향은 재정건전성 확보 요구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재부의 지출한도를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19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외부기관 지적, 평가 미흡 및 자체 구조조정 사업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2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4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및 불법스팸 대응 등 19개 사업에 9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재정개혁 추진사항 및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8개와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예산안 요구서를 5월 27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이후에 기재부와 협의·조정을 거쳐 9월경에 정부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감액을 90억원 했다고 했는데 신규와 증액 합쳐서 137억원이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 것이 217억원이면 그 차액이 80억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이광용 재정팀장**

- 저희가 지출한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가 증액이나 지출 구조조정은 '16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7년도 지출한도를 받을 때는 기금에서 7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차액을 생각하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금 자체의 수입은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출한도는 그러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감액을 전체 90억원 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저런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얼마 감액인가, 증액인가를 따졌는데 작년에는 작년 지출한도 기준이 아니고 작년에 지출한도 이후에 더 늘어나서 실제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올해는 지출한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것이 적어 보이는데 내년 예산도 지출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증액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것보다는 약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인데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80억원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90억원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한 번 정확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방송사 법정분담금 징수액이 금년에 비해 내년도에 463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방송사 법정분담금 중에 미래부에서도 같이 추계를 했는데 아마 홈쇼핑 쪽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광고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며칠 전에 미래부와 기금운용심의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매체별로 법정분담금이 감소냐, 증가냐 이 트렌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정분담금 징수액이 20% 이상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불안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업계 상황을 봤을 때 세입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거기다가 유일하게 주파수 할당 대가 징수액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데 금년에 막상 경매를 해 보면 또 사정이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 입장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정분담금 징수액 규모의 추이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분석을 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언중위의 경상비를 23억원 감액한다든지 그리고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금액을 153억원 감액한다든지, 이런 것이 물론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잘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치만 보면 언론중재위원회, 특히 경상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대폭적으로 감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라면 모르는데 경상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예산서에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진 것인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언중위의 경상비 같은 경우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서 일단 저희는 감액했는데 실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문화부의 일반회계에 넣든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는 또 방통위에 다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감액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상비는

다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 과정에서는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체부로 갈 수도 있고, 또 저희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5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편성 내역 지출 부분에 눈에 띄는 것이 이기주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이 153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근거가 어떤 내용입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국회 상임위에서 아리랑국제방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금으로는 프로그램 제작비만 지원하고 자산 형성 성격의 기자재라든지 인건비 성격은 문화부 일반회계로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도 사실은 프로그램 방송 제작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문화부의 일반회계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또 이 부분도 기재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 지적사항은 감독기관과 예산 지원기관을 일치시켜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EBS의 방송인프라개선이 전년에 비해 11억원 감액이 됐고, 또 출자도 약 4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MMS가 EBS에서 곧 정규방송으로 방송허가가 날 텐데 인프라 개선이 거의 다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EBS 쪽에서 요청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일단 EBS 방송인프라개선은 주로 디지털 전환 예산인데, 가능하면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전체 예산 실링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는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방송 출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옥 건축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출자금액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EBS 쪽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건의가 없었습니까?

○ **이광용 재정팀장**

- 예, EBS와 협의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관련해서 EBS-2TV MMS에 대한 제작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약 115%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KBS도 보면 대외방송 송출지원이 감액됐습니다. 숫자는 적은데 2억원 정도, 이

것이 앞으로 KBS의 대외방송 중요도가 점점 늘어날 텐데 감액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KBS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됐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KBS에서야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기를 바라지만 또 저희 쪽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줄였습니다. 다만, 기재부의 지출한도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다른 해보다는 좀 더 많이 인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수적인 부분들은 기재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대외방송 송출지원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 사정 상황에 따라 최소한으로 감액한 것이고 이 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6페이지 신규사업을 보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때 정해진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도 저희가 사업자 허가를 내주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지에 대해 그동안 논의만 많았고 구체적으로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반영된 것입니다. 방송정보 활용 기반 체계화가 10억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 빅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보고되고 논의됐기 때문에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대비해서 보면 방송정보 활용 기반 체계화 관련 사업이 예산 규모는 10억원으로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주요 증액내용을 보더라도 단위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솔직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주요사업계획으로 정했던 그 취지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이런 단위사업들의 예산 규모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하면 기존 사업들을 또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규 사업이 반영되기 쉽지 않고 저희 내부 사업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은 일단 꼭지를 달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꼭지를 담아 놓으면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이 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통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관 기관들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국제방송이라든가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보면 아리랑TV 사장의 업추비 사용 문제라든가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감사를 했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아직 위원들께서는 꼼꼼하게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보면 기금지원 대상기관 같은 경우는 구(舊) 방송위원회에서 기금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설명회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것들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경우는 없지만 기관별로 최대한 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는 지도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기금 사용에 대해서 한 번 교육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산 규모가 큰, 지원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교육이라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설명회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예산안 편성이 초기 단계지요?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큰 방향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국회 미방위 예결소위, 또 예결특위의 소위 가서 설명하고 답변해야 하는 것이 부위원장의 일인데, 그때까지도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을 이야기하면 작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의 예산 구성은 크게 보면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방발기금이 내년도 편성한 것을 보면 총 2,183억원 중에 방발기금이 1,647억원, 일반회계는 546억원입니다. 우리가 거둬들이는 방발기금이 또 전체 정부 세입, 전체 방발기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방발기금의 운영원칙을 가지고 국회에서 많이들 질의를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름 그대로 방송·통

신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경상비, 인건비 고정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요. 사업 중심으로, 방송 같으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같은 것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작년에도 국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이 우리 소관기관도 아닌데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감독권도 갖고 있지 않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원칙인 ‘인건비, 경상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큰 방향입니다. 관행처럼 해 온 것이 굳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근거나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을, 관행이라고 해 온 것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는데 그냥 당하고만 앉아있고 적당히 해명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괴로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아리랑국제방송의 인건비, 경상비 지원이 내년에도 들어 있지요?

○ 이광용 재정팀장

- 지금 현재는 뺐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 뺐습니까?

○ 이광용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예산도….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경상비만 빠져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빠졌습니까?

○ 이광용 재정팀장

-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당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물론 방송통신 쪽에서도 중재를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는 신문도 있습니다. 인쇄매체들이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구로 되어 있고, 문체부에서 언중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용 재정팀장

- 예, 언중위 쪽은 방통위 쪽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완전히 방발기금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 이광용 재정팀장

- 예, 현재 방발기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도 불공정하고 방발기금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매년 지적당하면서 우리가 방발기금 운영하는 부서인 방통위만 지적을 당하고 있고 고쳐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 예산 지금부터 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 근거로 해서 예산 개혁, 방발기금 운영의 개혁을 원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불일치되는 문제라든지 또 일부 방통기금 성격에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 왔고, 최대한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되, 다만 있던 것을 갑자기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정부 전체 예산 통제를 기재부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국회에 나와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질책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데 방발기금 운용에 재량권을 이야기해서 '이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못 합니까?

○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 전반적인 예산 방향과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발기금 자율성을 최대한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작년에 아리랑국제방송은 우리가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문체부와 공동으로 사후 감사를 할 수 있게 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법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사후 예산 감사라도 제대로 해서 방통위 내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우리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우리 감독권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후에 예·결산 감사는 할 수 있지요?

○ 이광용 재정팀장

- 예, 보조금법에 따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정식으로 공동감독권이 법령에 확립되기 전까지라도 예산·결산 감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그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로 더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것이 확정적인 예산이라기보다는 지출한도에 맞춘 예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편성한 것은 뼈대에 해당하고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잘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의견은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집행하고, 또 기재부와 협의할 때 참고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6-29-12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주)MBC강원영동 등 35개 방송사 13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로 오늘 보고드리는 세부계획의 근거가 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이 2015년에 확정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허가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35개사 133개 방송국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은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재허가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 기준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

교수 이상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할 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자의 경우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과 관련해서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5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 공고를 한 이후에 10월에서 11월 사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재허가 의결 및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계획은 앞서 보고하셨듯이 지난해 4월 그리고 9월에 의결했던 기본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를 주자,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동안 사업자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몇 번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논란이 됐던 것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이행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것이 왜 이슈가 됐냐 하면 '재허가 시 부과된 조건이 아니다.', 저 개인적 입장은 뭐냐 하면 재허가 조건 부과 이외에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그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 가장 앞 페이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서약서가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서 내용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것 외에 사업자계획서 내용의 법적인 성격,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황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전부다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사실 일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허가 취지 등을 봤을 때 최대한 사업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3년 후나 4년 후에 재허가 시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최대한 어느 정도 허가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이행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점검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 구체적인 심사계획 배점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허가 조건, 권고사항,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붙임> 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 이행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항목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입니다. 그렇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방송법 제17조를 보면 재허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항제6호를 보면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이것을 재

허가 시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서는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에 국한이 되는 것입니다.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입니다. 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것은 제3항제2호에 해당되겠지요? 그렇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부분은 저희가 대분류나 중분류 항목을 넣었을 때는 법에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를 다시 재분류해서 저희가 보기 좋게 해 놓은 것뿐이지, 그 법에 있는 원칙들이 다 그 분류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해 보니까 애초에 이 직전에 냈던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쪽 이렇게 일을 처리해 보니까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재허가 조건을 의결할 때 부과하는 조건들은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내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충실히 점검을 못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허가에 관한 규정 제3항제2호에 있는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현재 재허가 대상사업자 중에 우리가 재허가 조건 불이행에 따라 시정명령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집계를 해야겠지만 대표적으로 OBS가 기억이 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작년 말부터 한참 논의하다가 지금 아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느냐 하면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재허가 심사항목입니다.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당연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우리가 재허가 조건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줘서 심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건은 재허가 심사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OBS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한 번 처리했었고 다시 재차 시정명령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간은 다 도래되어 있고, 다만 자율적으로 다시 4월 말에 증자를 의결한바 있어서 증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행을 최종적으로 된 것을 보고 그다음에 부족하다면 다시 재차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꼼꼼히 재허가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음에 또 하나 의견드릴 것이 지역MBC 14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역MBC 공동상무제' 입니다. MBC 본사 재허가 때 조건을 부과한 것이지만 지역MBC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라, 이 조건을 MBC 본사에 부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실제로 그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MBC 경영의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MBC에 대해서만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본사가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노사관계에 개입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MBC에 대한 재허가 심사 시 지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사의 경영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점검을 하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재허가 심사할 때는 해당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최다주주가 MBC 본사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송사들 재허가할 때는 최다주주를 부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재허가할 때 필요시에는 부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대표자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경우처럼 계속해서 지역사의 자율경영 문제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다주주로서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진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OBS 경우에도 대주주가 출석한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번 연말에 하는 것이 35개 방송사 133개 방송국입니다. 굉장히 큰 심사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역MBC 말고 또 다른 지상파들이 많이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지역MBC 이외에 지역민방들과 라디오방송사도 포함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라디오도 있고, MBC 문제 아까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허가 심사할 때에도 공동상무제를 비롯한 서울MBC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자료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동상무제 지역MBC 3개사를 묶어서 공동상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법은 일종의 특별법인데 일반적인 상법상 독립법인들의 상근임원, 상무이사 3개를 한 개인이 겸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특히 방송사 독립성, 사회적 공공성이 근간인 방송사,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방송사의 상근인 상무이사를 3개씩 한 사람이 겸무하는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일단 문제제기해 놓고, 이런 것들을 재허가 심사 때에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역MBC의 책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MBC가 그렇게 대주주로서 경영방침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지배를 당한다고 할까, 통제당하고 있는 지역MBC들의 입장을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참고 의견이나, 우리 사무처에서는 준비자료를 챙길 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이 세부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6-29-12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사업자의 신규허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지상파 3사는 '12년부터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실험방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2015년 12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신규허가 대상은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 HD 본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5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은 '17년 2월까지 1단계로 수도권, '17년 12월까지 2단계로 광역시권·강원권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전국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신규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서비스인 만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인지와 UHD 방송이 신규로 도입되는 방송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영·기술적 능력과 콘텐츠 제작·투자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촉 기준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분으로 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된 자,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5개 심사사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항목과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항목의 배점 비중을 높였습니다. 또한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허가 여부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7월까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까지 허가 의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문구가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괜찮습니까? 조금 전에 읽으신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문장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취지가 하여간 배점의 40%에 미달하면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야 문구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 이전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이 쓰여서요. 정확한 사실여부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경과에 당구장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12~'14년 유럽 방송표준을 적용한 UHD 실험방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5년에는 ATSC 3.0 기반 실험장비를 이용한 UHD 실험방송 실시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잘못됐을까 봐 찾아봤는데 작년 12월 1일 발표가 됐습니다. 지상파들이 미국방식도 실험방송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유럽방식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취지가 있습니까? 지상파들이 발표했던 것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12~'14년 동안 실시했다는 표현을 이상 없이 기술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을 '성공적으로' 쓴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유럽방식은 성공적이라고 하고 미국방식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정책결정을 했느냐, 판단했느냐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고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문제없이 잘 마쳤다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치판단이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지요. 여기도 사실은 2015년에 실시한 것이 ATSC 3.0의 아직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표준을 적용해서 실험 장비 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앞 문장에서 2012년부터 2014년 유럽방송표준을 적용한 UHD 실험방송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2015년 ATSC 3.0 실험 장비를 이용한 UHD 실험방송 실시, 이렇게 성공적이라는 것을 일단 빼지요. 가치 평가 문제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으십니까? EBS가 2017년 9월에 UHD 방송 개시하도록 시기가 다른 지상파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EBS의 사옥 이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통합사옥 전에 만약에 개시하게 된다면 주조정실에 중복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EBS 요청에 의해서 늦춰진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청주·충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6-29-12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청주·충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청주·충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주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 허가신청에 따른 변경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송사업자는 청주문화방송(주), 충주문화방송(주)입니다. 신청 내용은 청주문화방송(주)과 충주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 허가와 합병 후 회사명은 ‘(주)엠비씨충북’으로 변경하고, 방송구역과 연주소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의 기본방향은 변경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

성하고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변경허가 심사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성 확보, 합병법인의 조직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합병법인의 지역성 확보 방안으로 피합병지역인 충주 지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한 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촉 기준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격사유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한 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자의 경우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위원회 임무는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결정, 그리고 세부 심사 평가,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항목은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합병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임을 고려하여, 지역적·문화적 필요성, 안정적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평가 방안은 심사위원간 토론을 거쳐 각 심사항목과 총평에 대해 각 위원별 또는 동일 의견별로 정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허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시청자 등 관계자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허가 여부 및 허가조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5월 말까지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심사 등을 시작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변경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여기 보니까 지역MBC들의 통폐합, 통합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청주·충주MBC는 공동상무가 없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번 3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여기 보면 청주MBC는 (주)문화방송이 서울MBC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분율 89.4%니까 통합 같은 주요 사안 의결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분의 2 이상, 그런데 충주문화방송의 경우에는 서울MBC가 51%를 가지고 있어서 주요 사안 의결 정족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총에서 통합 의결할 때 이견이나 이른바 소액주주도 아닐 것입니다만 하여튼 3대, 4대, 5대 주주가 있을 텐데 그런 주주들의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부 주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주식매수를 청구하고 주식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그 소유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협상이 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부적인 사정까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을 추진한지 기간이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통합 협의를 시작해서?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주주들을 다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했군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되니까 그랬을텐데, 왜 그러냐 하면 청주·충주 합해서 충북문화방송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소지역 문화도 존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충주문화방송의 소액주주들은 그 지역 유지들이나 기업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통합 필요성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서울MBC에서 내려 보낸 공동상무가 또 정지 작업을 하면서 물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서울MBC가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시기적으로 본다면 저희에게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접수했던 것이 3월 중순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동상무가 임명됐던 것은 그것보다 열흘 정도 시기가 빨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시기적으로 명백하게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마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고 또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청주·충주 합병은 한 5년 정도 기간을 거쳐 소액주주들 주식을 계속 처분하고 매입하는 과정을 준비해서 상당 부분 저항감이나 거부감을 희석시킨, 많이 완화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소단위 지역문화도 존중되어야 하고 또 지역 문화발전과 의견수렴에 대해 창구 하나가 없어지게 됨에 따른 상실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한 가지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바로 잡을까 합니다. 청주·충주 공동상무가 이번에 임명이 됐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공동상무는 지역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지역출신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서울에서 내려 보낸 사람이 아니고 물론 서울에서 내려 보낸다는 것이 파견 형식이 아니고 광주지역이나 대구지역의 공동상무는 서울에서 퇴직을 하고 정식 발령을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청주·충주의 공동상무는 그 지역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청주·충주의 사장은 서울에서 서울 출신이 내려가서 맡고 있기 때문에 공동상무는 균형을 맞춰서

그 지역출신이 공동상무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광주·목포·여수, 또 대구·포항·안동지역의 공동상무는 그 지역출신이 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상무는 서울에서 발령을 받아서 내려갔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역시 맞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갈등관계 부분이 없는지를 행정기관에서 잘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보지 말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지역방송의 발전이 어느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경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붙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상파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경영 합리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도 함께 고민하면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안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광주·목포·여수MBC의 통합 문제, 대구·포항·안동MBC의 통합 문제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직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서류를 가져온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지요. 우리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광주지역에 가서 일종의 자료수집, 조사활동을 했는데 통합의 목표 시점이 내년 초입니다. 내년 1, 2월이 광주·

목포·여수MBC의 통합 시점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공동상무를 서울에서 퇴직시키고 내려 보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주요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역MBC들의 통폐합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전을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완전한 경영합리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존중하고 소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해 가면서 통합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자꾸 이야기가 다른 데로 번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유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바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몇 월 시점에 통폐합을 목표로 맞춰 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일방에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그것이 기정사실로 속기록에 남는 것 같아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말씀, 또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어느 일방 노조 쪽이나 일반 사원 쪽의 이야기가 아니고 광주·목포·여수MBC의 최고 경영진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방송사의...

○ 김재홍 부위원장

- 현지에 가서 조사활동하고 만나서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언하는 것이 그냥 한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전은 청주·충주문화방송에 대한 심사계획안이고, 다른 방송사 부분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잠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자꾸 확대하지 마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팩트 문제 가지고 이견이 있으셨는데 분명한 것은 시기는 못 박지 않았으나 지역공동상무제 도입 당시 MBC 안광한 사장이 방문진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동상무를 임명한다.” 그 이야기는 아시지요? 그 보도된 내용은….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정확하게 그 보도를 접한 적이 없어서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찾아보시면 방문진에 출석해서 공동상무제도 도입의 취지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이 청주·충주문화방송이 합병을 하더라도 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방송구역과 연주소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취지는 엠비씨충북으로 합병이 되더라도 충주문화방송은 또 충주문화방송대로 자체제작, 그다음에 송출할 수 있는 연주소를 유지한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비율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해서 완전히 한쪽의 콘텐츠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통합은 외형적으로 통합이지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사업자 간 통합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실질적으로는 또 콘텐츠 제작은 각자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나름 MBC 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방송환경을 헤쳐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반영된 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고용 승계 부분은 어떻게 정리된 것으로 들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는 것으로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노사 양쪽에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노조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2016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6-29-12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마> ‘2016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6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안동문화방송(주) 등 6개 방송사의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로 오늘 보고드리는 세부

계획안의 근거가 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은 2015년에 확정안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허가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지상파 DMB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은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재허가 시에 부과되었던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은 앞서 보고드린 지상파 재허가 세부 계획안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상파의 경우는 11인인데 반해서 이번 경우에는 인사 9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로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상파방송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4>번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이 부분입니다. DMB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배점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과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5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를 방송사업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5페이지에 재허가 여부 결정 두 번째 동그라미도 아까 UHD 허가 기본계획(안)에 이야기했던 그 자구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여기는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앞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빼든지...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심사사항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상파DMB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시작이 됐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이후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됐는데, 수도권과 지역사정이 다를 수 있고 이번에는 지역지상파DMB 중에서 일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한 재허가 계획이긴 한데 지상파DMB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 한 번이라도 흑자를 내거나 시청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입이 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지상파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초반에는 적자를 내다가 2008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도권 독립DMB 3사가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적자폭이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서 한 5억원 정도 줄었다가 지금 다시 광고매출이 대폭 떨어지는 바람에 '14년 결산기준으로 40억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의 배점을 다른 지상파 재허가 심사사항보다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높게 평가를 받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번 허가를 해 준 경우에 그것을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허가해 주고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로 해 주고 이렇게 해 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비스별로, 시장별로 한 번 지상파DMB 시장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상파DMB방송이 과연 계속 갈 수 있는 서비스 인지를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당 사업자들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주로 발전방안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송시장이든 통신시장이든 미디어시장이든 인터넷시장이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엄청나게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대부분 지금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재, 보완재, 소위 말하는 어떤 것은 우등재이고 열등재이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시청자들이 그렇게 판단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도 아니고 감소세로 줄어간다는지 했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지상파DMB 발전방안」 이런 말이 아니고, 방통위가 「지상파DMB 정책방안」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서 어떤 급격한 변화를 주기가 곤란하다면 단계적으로 서비스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모색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허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배점을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지상파DMB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류 과

장께서 2008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그것은 사실 회계분리하고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말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한 번 지상파DMB 사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걸맞은 합리적인 정책을 우리가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재허가 기본계획은 이것대로 하되 그것과 병행해서 그 작업을 빨리 해서..., 시행을 언제 하는 것은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같은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조금 다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다르면, 우선 답변을 하려는 것 같아서...

○ 김석진 상임위원

-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특별한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늘 안건 의결사항만 보더라도 심사위원단을 계속 구성해야 하는데 책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파 재허가 133개 방송국, 그다음에 UHD, 또 이번에 지상파DMB까지,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때 중복이 되어도 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만약에 심사위원회 운영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일부 중복이 있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불가피하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복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책임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가 굉장히 고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상파DMB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1,200만명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기주 위원 퇴장)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얼마 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믿을 수 없는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연간 한 번 접속했던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중복을 피해서 1,200만명이 된다는 것인지, 만약에 1,000만명이 넘는 시청자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아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존재, 그런 자구는 아니었습니다만 정말 기본적인 방향 자체를 어떻게 정책을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도 1,000만명이 넘는 시청자가 존재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DMB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 간의 방송접속이라든가 또 재난방송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HD 전환을 곧 한다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HD 전환이 된다면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접속 끊김 현상만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SD 아날로그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자꾸 숫자가 빠지는 것인데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지금 화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DMB 6개사가 공동으로 HD급 고화질 방송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TTA을 통해 송수신 정합표준을 기존 SD에서 HD까지 송출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그것이 국가 표준으로 등재가 되려면 미래부의 기술기준으로 승인을 받아서 등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래부에서 기술기준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파 6개사에서는 만일 기술기준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험방송을 추진하려고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DMB 재허가 심사를 우리가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재허가를 해 준다면 몇 년 하게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재허가 의결할 때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2년, 3년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지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은 화질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청자도 1,000만명 이상이 아직 존재한다면 재허가를 해서 우리가 몇 년간..., 재허가라는 것은 앞으로 지원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고, 허가를 해 준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DMB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들어갔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사업운영에 대한 예산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터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터널에 수신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하는 데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재허가를 해 주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지원도 해 주어야 하고 또 예산

도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정확한 실태, 시장조사, 그리고 화질개선이 이루어질 때 과연 이것이 사양길로 접어든 것이 아니고 더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정책적 판단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상파DMB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DMB 정책이 기술의 변화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UHD 기술표준 중에 미국방식 ATSC 3.0 같은 경우 이미 지난해 NAB에서 고정 UHD 수신과 이동 중 HD 화질이 1개의 채널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에 ETRI에서도 계층분할다중화 기술을 개발해서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1개의 채널에 고정형 UHD 수신과 이동형 HD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 방송하기에 앞서서 UHD 기술표준을 정하겠습니다만 그 기술표준에 따라 다르겠지요. 고정형으로만 할지, 아니면 이동형까지 같이 하게 될지,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DMB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SD에서 HD로 전환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말씀 주신 대로 UHD가 되면 그것 자체로서 이동수신이 된다, 이런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와 실제로 그것을 할 것이냐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도 있고, 제가 어제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코바(KOBA) 방송장비 기기 전시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본 것이 뭐냐 하면 MMS 같은 경우도 이것이 MMS라고 명확히 규정은 못 하겠지만 방송용 주파수 RF를 이용한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보다가 브로드밴드로 전환해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소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MMS로 볼 것이냐, 무엇으로 볼 것이냐, 명명할 것이냐는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RF와 브로드밴드를 결합할 경우 바로 이런 MMS들이 손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코너에서 봤던 것이 미국에서 라디오에 대한 수요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정부가 협의해서 이용자의 추가 부담 없이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 라디오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DMB 정책이라든가 MMS 정책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송수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방송통신 기술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이용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이용환경의 변화를 우리 정책이 적시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DMB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DMB 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당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행 이 DMB를 개선시키기 위해 투자를 더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이동 간 수신이 가능한 방송기술 도입 UHD를 포함해서 전환할 것이냐, 국가 재정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왕에 깔려 있는 DMB 인프라를 폐기하고 새로운 방송기술을 도입해서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만대 이상의 DMB 시청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률조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광고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시청률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지원할 광고주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MB의 3대 문제점, 자체 콘텐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상파 프로그램들 그대로 수중계하는 것입니다. 난시청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질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야날로그 화질 그대로이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영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 MBC, SBS를 포함해서 어떤 지상파도 DMB에 대한 전담인력,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겸무겸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맹장처럼 거느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한국DMB나 U1미디어처럼 작은 독립DMB사들이 수익구조도 만들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말에 KBS, MBC, SBS 같은 큰 지상파 사장들이 다 왔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예산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없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반납하고 민간 독립DMB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더니 펄쩍 뛰면서 “그러면 우리 방송의 이동 간 시청은 어떻게 하고요?”, 말하자면 이동 간 시청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DMB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투자계획은 전무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랬더니 나온 이야기는 역시 “정책당국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방송의 이동 간 시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10년이 넘은 이 DMB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연구용역도 주어서 1차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정책연구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심사하면서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사실 DMB에 대한 대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네 분 위원님이 거의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DMB에 관한 정책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다.”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현재 상태로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예상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1, 2년 후에 발전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단 심사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29-127~12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배경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간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도·감독과 제도개선 및 조사·제재 등 불법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상시 모니터링 운영 결과에 따라 기술적 조치 요청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4개 사업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 내역은 아래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원투커

커뮤니케이션, (주)정담솔루션, 그리고 (주)호아컴즈 이 3개의 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주)원투커뮤니케이션과 (주)정담솔루션은 첫 번째로 금칙어 차단 설정 조치와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의 이행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그리고 (주)호아컴즈는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의 이행결과와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원투커뮤니케이션과 (주)정담솔루션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해당하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상시 종업원 수가 각각 5명·6명이고,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기업이며, 시정조치를 즉시 이행하려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서 20% 감경하여 560만원을, 그리고 (주)호아컴즈는 위반행위가 1건이고 종업원 수가 5명이며, 매출액 2억원 정도의 소기업으로 시정조치 완료한 점을 감안해서 50% 감경하여 3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 <붙임 4>를 보면 웹하드 사업자 일반현황이지 않습니까? 일반현황에 사업규모가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여기에 보완해 주십시오.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에 조사 대상이었던 사업자들이 57개입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59개 74개 사이트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여기에 적시해 주십시오. 이번에 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정조치 등을 내리는 사업자들은 몇 회 이상 위반이 발견됐지요?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6회 이상 시정요구를 했고 그것을 시정하지 않은 사업체로 한정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최초로 모니터링 할 때 몇 개 정도의 사업자들이 이런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있었습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전체 웹하드 사업자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해서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 조사해서 제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만일 기획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부분의 웹하드 사업자들이 음란물들을 본인들의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를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웹하드 사업자들의 법 위반 정도는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획조사를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한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자칫 오늘 제재하는 사업자만 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웹하드 사업자 전체적으로 보면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위반의 정도는 대단히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를 내리는 대상사업자 외에 앞으로도 여타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과태료 부과 대상 기본방향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그다음에 상시 종업원 수 5명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에서 20%까지 감경해서 부과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붙임

4>자료를 보니까 웹하드 사업자 일반현황에서 지금 업체 현황이 매출액 규모가 약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상위 5개 업체가 거의 70%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10명 이하의 직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시 모니터 요원들도 있고 법무팀도 있고 다 그런 직원들이 채용되어서 이런 스크린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직원이 5명 이하의 아주 영세규모의 그런 웹하드 업자들이 결국은 수익이 나는 모델이 이런 음란물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보면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마다 영세업자라고 자꾸 봐주기 시작하면, 감경하다 보면 이런 단속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다 보면, 거의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음란물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엄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감경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영세업자니까 봐 준다면 단속의 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사무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다른 조사·제재 건과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하되….

○ 김석진 상임위원

- 물론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음란물 차단 방지를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시정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감경비율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다 이런 영세업자들이 여기에 접근하기 때문에 과태료 경감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제재 수위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전파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차이가 오프라인은 직접 음란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것은 웹하드 사업자가 직접 주고받은 사람은 아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소홀히 한 측면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직접 주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한 것보다 온라인에서 전파시킨 것을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기술적 조치를 해서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웹하드 사업자 전부다 이런 것을 합니까?

○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예,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19금 성인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카테고리안에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인터넷, 디지털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재수위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영세사업자 제재를 낮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높은 대기업 직원 수도 많은 기업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고, 영세사업자도 범법행위,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봐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가 금지행위를 했다면 매출액 기준에 따라 영세업자를 감경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지요.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대처하느냐?”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웹하드 사업자 전체 책임자를 모아 놓고 교육 홍보를 하든가 제재한 뒤에..., 이런 것이 사회 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작년에 법 시행 당시에도 저희들이 사전 설명회를 다 했는데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 김재홍 부위원장

- 일제히 한 번 모아서 교육을 하든가, 요사이 중·고등학생뿐 아니고 초등생들도 야동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2세들의 교육 문제이고 사회 윤리 문제인데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불법음란 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것을 100% 방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해서 불법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의 수준은 기술적으로 다양한 수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조치 수준을 점차 높여서 걸러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개정안을 만들 때 제가 지금 말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려고 시도했었지만, 또 너무 강한 규제라고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웹하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가 불려서 행정지도한다고 해서 근절되기 힘든 것이, 이것이 웹하드 사업자의 일정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꼭 해야 하지만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고 물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니까, 불법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수준의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법 위반인 것으로 보는 쪽으로 정책방안을 이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이번 과태료에 대해서 꼭 과태료를 올리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웹하드 사업자에게 강한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사. 201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16-29-13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사> '201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의결주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2016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별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중복사업자 포함해서 총 25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동전화와 알뜰폰·초고속인터넷은 2015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전화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 150만명 이상, 포털인 경우에는 '15년 말 기준으로 연간 방문자 수가 1억 5,000만명 이상인 사업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시범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평가지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서 금년에 다시 평가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범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가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5개의 대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지표는 아래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위원회에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기존의 평가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시범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검색·메일·커뮤니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 활용입니다.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한 최고득점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상을 표창하고, 과징금 부과 시에는 우수등급을 받은 경우에 30% 이내에서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늘 해 오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이긴 하지만 올해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규모가 큰 포털에 대해 처음으로 시범평가가 실시되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 적정한지 잘 살피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6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5분 폐회 】